2020 KBO LEAGUE REGULATIONS

2020 KBO 리그 규정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2020년도

KBO 리그 규정

KBO

목 차

제1장 KBO 정규시즌

제1조 경기방식 ····· 1
제2조 승률계산법 ····· 1
제3조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 1
제4조 경기규칙 ····· 2
제5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 2
제6조 홈구단의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 ····· 2
제7조 경기불참가에 대한 벌칙 ····· 3
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조치 ····· 3
제9조 경기관리인 ····· 3
제10조 안전보장 ····· 4
제11조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 4
제12조 심판위원수 ····· 4
제13조 경기 전 연습시간 ····· 5
제14조 현역선수 등 등록 ····· 5
제15조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 ····· 7
제16조 경기사용구와 관리 ····· 9
제17조 구단기 게양 ····· 9
제18조 입장요금 ····· 9
제19조 응원시 금지사항 ····· 10
제20조 경기중지에 따른 입장요금 처리 ····· 10
제21조 주·야간경기 및 경기개시 시간 ····· 10
제22조 경기시간 제한 ····· 11

제23조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 11
제24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 12
제25조 재정신청의 절차 ····· 12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 13
제27조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 여부 ····· 14
제28조 비디오 판독 ····· 15
제29조 의무 ····· 26

제2장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제30조 경기방식 ····· 28
제31조 운영관리 ····· 28
제32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 28
제33조 경기 ····· 29

제3장 KBO 준플레이오프

제34조 경기방식 ····· 30
제35조 운영관리 ····· 30
제36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 30
제37조 경기 ····· 31

제4장 KBO 플레이오프

제38조 경기방식 ····· 32
제39조 운영관리 ····· 32
제40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 32
제41조 경기 ····· 33

제5장 KBO 한국시리즈

제42조 경기방식 ····· 34
제43조 운영관리 ····· 34
제44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 34
제45조 출장자격 ····· 35
제46조 경기 ····· 36
제47조 수입금의 분배 ····· 36
제48조 입장요금(KBO 포스트시즌 경기) ····· 36

제6장 KBO 올스타전

제49조 운영관리 ····· 37
제50조 편성 ····· 37
제51조 구성 ····· 37
제52조 수상자 선출방법 ····· 38
제53조 세칙 ····· 39
제54조 경기수당 ····· 39
제55조 경기장 집합시간 ····· 39
제56조 대회불참 처벌 ····· 40
제57조 경기사용구 및 연습구 ····· 40

제7장 KBO 퓨처스리그

제58조 리그편성 ····· 41
제59조 경기방식 ····· 41
제60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 41
제61조 홈구단의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 ····· 42

제62조 경기불참가에 대한 벌칙 ····· 42
제63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조치 ····· 42
제64조 경기관리인 ····· 42
제65조 안전보장 ····· 42
제66조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 42
제67조 심판위원수 ····· 42
제68조 출장자격 ····· 42
제69조 경기사용구와 관리 ····· 44
제70조 입장요금 ····· 44
제71조 경기중지에 따른 입장요금 처리 ····· 44
제72조 경기개시 시간 ····· 44
제73조 경기시간 제한 ····· 44
제74조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 44
제75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 44
제76조 경기제도 ····· 45
제77조 시상 ····· 45

■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룰 ····· 46
■ 2020년 구단별 경기관리인, 경기관리 대리인,
스피드업 및 도핑 · 경기사용구 담당자 ····· 47
■ 경기의 스피드업 ····· 48
■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 ····· 55
■ 벌칙내규 ····· 56
■ KBO 표창규정 ····· 60

본 KBO 리그 규정(KBO 규약 및 공식야구규칙에 의거)은 KBO가 주최하는 2020년 KBO 리그(시범경기, 정규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올스타전 및 퓨처스리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공식야구규칙과 상이할 때는 본 KBO 리그 규정이 공식야구규칙보다 우선한다.

2020년 KBO 리그 규정 변경 요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정규시즌 1,2,3,4,5위 2개 구단 또는 3개 구단 이상일 경우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정규시즌 2,3,4,5위가 2개 구단 또는 3개 구단 이상일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 정규시즌 1위가 2개 구단일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별도의 1위 결정전 거행, 3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제11조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경기거행 여부 결정 및 경기거행의 결정 이후 경기 시작전 상황이 바뀌었을 때 경기 거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기운영위원이 경기관리인과 협의 하에 결정	해당 사항에 대해 경기관리인과 협의하지 않고 경기운영위원이 결정
제14조 [현역선수 등 등록]	1군 경기 27명 등록, 25명 출장 (9월 1일 이후부터는 32명 등록, 30명 출장)	1군 경기 28명 등록, 26명 출장 (9월 1일 이후부터는 33명 등록, 31명 출장) <신설> 부상자에 한해 한 시즌 최대 30일까지 부상자 명단 등재 가능 - 이 기간 중 현역 선수 등록일수 인정
제21조 [주 · 야간경기 및 경기개시 시간]	7,8월 일/공휴일 경기개시 시작 18시	18시를 17시로 변경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외야수에 한해서 그라운드에서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 및 리스트 밴드의 사용 허가	경기 중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포수, 내야수, 외야수의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 및 리스트 밴드 사용 허가 투수는 벤치에 한해서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 사용 허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 여부]	경기개시 전 :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으로 확인 후 경기관리인과 협의하여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경기개시 후 : 해당 경기심판원이 지역 기상청으로 확인 후 경기관리인과 협의하여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해당 사항에 대해 경기운영위원(경기개시 전)과 경기심판원(경기개시 후)은 경기관리인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
제28조 [비디오 판독]	3.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⑨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기존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공식야구 규칙 5.09(a)(8) 및 6.01(a)(10)에 의거하여 타자 또는 주자가 수비하는 야수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방해 인정 여부 결정
	5. 비디오 판독의 기회 구단 신청과 별도로 심판 재량으로 경기당 비디오 판독 1회 실시 가능	심판 재량의 비디오 판독 실시 기회 폐지
	6. 비디오 판독의 절차 5분 안에 판정 번복의 근거를 발견 못할시 원심 유지	5분을 3분으로 단축
제44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한국시리즈 홈구장 편성 정규시즌 우승팀(2) - PO 승리팀(3) - 정규시즌 우승팀(2)	한국시리즈 홈구장 편성 정규시즌 우승팀(2) - PO 승리팀(2) - 정규시즌 우승팀(3)
제51조 [구성]	올스타전 감독추천선수 – 투수 6명	올스타전 감독추천선수 - 투수 7명
제53조 [세칙]	베스트12로 선발된 선수가 부상 등으로 출전 불가시 감독은 대체 선수 선발	베스트12로 선발된 선수가 부상 등으로 출전 불가시 감독은 해당 위치 최다 득점 2위 선수를 대체로 선발
제59조 [경기방식]	북부리그 230G, 남부리그 300G, 총 530G 북부리그 팀당 92G (동일리그 구단간 14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남부리그 팀당 100G (동일리그 구단간 14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번외경기 VS NPB 소프트뱅크 호크스 (총 12경기) SK, 고양, 한화, KT와 홈 3연전 경기 거행	북부리그 260G, 남부리그 345G, 총 605G 북부리그 팀당 104G (동일리그 구단간 17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남부리그 팀당 115G (동일리그 구단간 17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번외경기 VS NPB 소프트뱅크 호크스 (총 9경기) 롯데, 삼성, NC와 홈 3연전 경기 거행

제1장 KBO 정규시즌

제1조 경기방식

1. 단일 리그제로 각 구단은 144경기(구단간 16차전)씩 총 720경기를 거행한다.
2. 연장전은 12회(KBO 포스트시즌 15회)까지로 하고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로 한다.

제2조 승률계산법

승률은 승수/(승수+패수)로 한다.

제3조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1. 연도 구단순위는 KBO 한국시리즈 우승구단이 제1위, 준우승 구단이 제2위, 그 이하는 KBO 정규시즌 승률순으로 한다.
2. KBO 한국시리즈, KBO 플레이오프, KBO 준플레이오프,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정규시즌 1위 결정전의 기록은 KBO 정규시즌의 기록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취급한다.
3. KBO 정규시즌 제2, 3, 4, 5위가 2개 구단 또는 3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전적 다승,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정규시즌 제1위가 2개 구단일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별도의 1위 결정전을 거행한다. 이때 홈구단은 양 구단간 경기에서 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우위에 있는 구단으로 하며, 입장수입은 정규시즌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한다. 정규시즌 제1위가 3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1위 결정전

을 거행하지 않고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전적 다승,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단, KBO 정규시즌 제6, 7, 8, 9, 10위가 2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승률로 순위를 결정하되, 승률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로 한다. 문서상 표기, 개막전 편성, KBO 신인 드래프트 등 순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단간 전체 전적 다승, 해당 구단간 전체 다득점, 전년도 성적 순위로 순서를 정한다.
(2020.1.10 개정)

제4조 경기규칙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공식야구규칙에 따른다.

제5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1.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예정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경우 총재가 추후 결정하며 연기된 경기는 필요한 경우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다.
   단, 더블헤더 제1경기는 9회까지로 한다.
2. 공중파 중계로 인해 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홈구단이 결정하여 KBO에 통보한다.
3. 경기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즌 개막전까지 홈구단이 결정하여 KBO에 통보하고 발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총재가 천재지변, 경기장 사정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홈구단의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

1. 홈구단이 공식발표된 경기일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총재에 의해 그 경기는 몰수되며 원정구단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단, 원정구단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시간 전에 도착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원정구단이 예정된 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 규정위반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제7조 경기불참가에 대한 벌칙

1. 원정구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예정 시간에 도착한 홈구단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본 조에 의하여 원정구단이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는 홈구단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금의 액수는 총재가 결정한다.
2. 상기의 경우 배상금 외 총재에 의해 따로 규정위반의 제재조치가 가하여진다.

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조치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홈구단은 그 경기의 중지를 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총재는 이 요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하여 경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교통기관 운휴 등으로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도 홈구단은 당일 경기일정의 취소를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천에 의한 중지와 같이 취급한다.

제9조 경기관리인

1. 홈구단의 임원이 그 경기의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모든 직능을 대행한다.
2. 지정된 경기관리인의 부재시에는 등록된 경기관리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부장급 이상).

(주)경기관리인은 구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경기를 지체 없이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재를 대신하여 모든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보장

홈구단은 KBO 규약 제136조에 의거 심판위원 및 원정구단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KBO 리그 전 경기에 적용).

제11조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1. 경기거행 여부 결정은 KBO 경기운영위원이 한다. 경기개시 3시간 전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경기운영위원은 강우 예보가 있는 경우 홈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홈구단이 경기운영위원의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재는 해당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
2. 경기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기운영위원은 즉시 구장에 나가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거행을 결정한 이후 경기개시 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경기운영위원이 거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경기실시의 결정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예정 시간으로 한다.
   경기개시 예정 시간부터는 주심이 경기개시, 일시정지, 재개 또는 중지의 결정자가 된다.

(2019.3.13 개정)

제12조 심판위원수

경기는 4심제로 한다.

단, 심판위원 유고시에는 3심제 또는 2심제의 경기진행도 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 전 연습시간

1. 홈구단의 타격연습(경기개시 90분 전까지)
2. 원정구단의 준비운동 및 타격연습 60분간(경기개시 30분 전까지)
3. 홈구단의 수비연습 10분간(경기개시 20분 전까지)
4. 원정구단의 수비연습 10분간(경기개시 10분 전까지)

① 경기관리인은 그라운드 사정 또는 기타 이유로 경기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정구단에게 3시간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원정구단 연습 중에는 홈구단 선수는 페어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③ 관객이 입장한 후에는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모자를 써야 하며, 언더셔츠 차림으로 연습할 수 없다.

제14조 현역선수 등 등록

1. 벤치에 들어가는 인원

경기 중(타순표의 교환 후부터 경기종료까지)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KBO에 등록승인을 필한 자에 한한다.

감독 1명

코치 8명(불펜코치 포함)

현역선수 28명(9월 1일 이후부터 5명 추가하여 33명)

단, 경기출장은 26명(9월 1일 이후부터는 31명)으로 한다.

매니저 1명

트레이너 2명

기록원 1명

홍보 1명

통역 3명
계 45명
현역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가 출장정지의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선수를 당일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2명의 선수로 지명(▲)할 수 있다. 현역선수를 27명 미만(9월 1일 이후부터 32명 미만)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된 모든 선수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2017.1.10 ➜ 2020.1.10 개정)

2.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는 말소신청 시간부터 KBO 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없으며, KBO 규약 제27조에 의하여 말소 공시일로부터 만 1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차 현역선수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선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 출생을 사유로 경조 휴가를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선수가 현역선수일 경우 현역선수등록이 말소되지만 휴가 기간(최대 5일까지)을 현역선수 등록일수로 인정받는다. 해당선수는 경조 휴가가 부여된 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가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말소 공시일로부터 만 10일이 경과되지 않아도 양수구단의 현역선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019.1.15 개정)

3. 현역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KBO 리그 정규시즌 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할 경우 10일, 15일, 30일 중 택일하여 부상자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 명단 등재는 당해 시즌에 현역선수로 1일 이상 등록한 부상선수에 한해 시즌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10일 3회, 15일 2회, 30일 1회에 한함) 선수의 최종 경기 출장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단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최대 3일 소급 적용).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현역선수등록이 말소되지만 이 기간을 현역선수 등록일수로 인정받는다.

(2020.1.10 신설)

4. 코치 겸 선수, 선수로 등록된 자는 베이스코치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
5. 현역선수등록은 28명으로 한다.
   ① 현역선수등록 및 말소는 전화로 하며,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현역선수등록 및 말소는 예정된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KBO 정규시즌 기간 중 경기가 없는 구단의 현역선수등록 및 말소는 경기를 거행하는 구단의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로 한다.
   ④ 경기를 거행하는 구단들의 경기개시 시간이 상이할 경우 경기가 없는 구단의 현역선수등록 및 말소는 가장 늦게 개시하는 구단의 마감시간까지로 한다.

제15조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

1. 양 구단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매 경기마다 그 경기에 참가하는 9명 이내의 감독, 코치와 27명의 현역선수 명단 및 타순표 각 3통을 경기개시 1시간 전(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 종료 10분 후)에 홈 플레이트 뒤쪽에서 주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심은 그 장소에서 양 구단의 출전선수 명단 및 타순표를 대조한 후 각 1통씩 상대구단에게 교부한다.

2. 가. 경기개시 전 출장선수 명단과 공식타순표를 교환 및 제출한 후에는 경기시작 전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① 미도착 등으로 인하여 불출장한 경우
(해당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지명타자 사용 불가)

② 심판진이 명백한 부상이라고 인정한 경우
(해당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지명타자 사용 가능)

나.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다. 교체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투수

가) 우투수 → 우투수

나) 좌투수 → 좌투수

단, 구원투수 교체시 동일한 유형의 투수로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2018.1.24 규칙위원회)

② 타자

가) 우타자 → 우타자

나) 좌타자 → 좌타자

라. 해당선수들은 교체 후 당일 경기출장이 금지된다(당일 경기 불출장 간주). 교체선수 명단에 좌·우 동일타석을 사용하거나, 좌·우 동일한 유형으로 투구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스위치 타자도 예외 적용)로 한다.

(2015.3.5 규칙위원회)

3. 각 경기의 주심은 출전선수가 현역선수로서 등록이 되어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타순표의 발표
주심은 경기시간 30분 전(더블헤더 제2경기는 타순표 교환 직후)에 기록위원에게 양 구단의 타순을 알려주고 방송원은 이를 관객에게 알려야 한다.
5. 선발투수 예고
구단 담당자(매니저)는 이동일일 경우 낮 12시까지 KBO로 선발투수 예고를 통보하고, 주중・주말연전(화~토)의 경우 경기종료 직후 KBO 기록위원에게 통보한다.
전일 예고된 선발투수가 당일 경기에 불출장할 경우 당일 경기출장을 금지한다.

제16조 경기사용구와 관리

1. 경기사용구는 KBO가 선정한 경기사용구를 사용한다.
2. KBO는 경기사용구를 월 1회 구입하여 각 구단에 공급한다. 각 구단 경기사용구 담당자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심판위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심판위원은 봉인해제 및 공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경기에 사용한다. 구단에 경기사용구가 전달된 이후에는 구단 담당자가 경기사용구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
3. 봉인해제 후 경기 중 사용하지 않은 경기사용구는 경기종료 후 심판위원이 별도로 봉인하여 다음 경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구단기 게양

홈구단은 전 구단기를 상비하여 경기가 행하여지는 당일 양 구단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전년도 우승구단은 구단기와 소정의 우승기를 함께 게양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장요금

입장요금은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응원시 금지사항

구장 내의 관객석에서 앰프(AMP)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응원 행위로 관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기에 지장을 줄 경우 주심은 경기관리인에게 응원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경기중지에 따른 입장요금 처리

1. 노게임이 선고되었을 때 동일구장의 다음 경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식경기(서스펜디드 경기 포함) 또는 정식 무승부 경기가 되었을 때 전액 징수한다.

제21조 주 · 야간경기 및 경기개시 시간

<table>
<tr><th>구분</th><th>토요일</th><th>일요일/공휴일</th><th>평일</th></tr>
<tr><td>3월</td><td rowspan="3">17:00</td><td rowspan="3">14:00</td><td rowspan="9">18:30</td></tr>
<tr><td>4월</td></tr>
<tr><td>5월</td></tr>
<tr><td>6월</td><td colspan="2">17:00</td></tr>
<tr><td>7월</td><td rowspan="2">18:00</td><td rowspan="2">17:00</td></tr>
<tr><td>8월</td></tr>
<tr><td>9월</td><td rowspan="2">17:00</td><td rowspan="2">14:00</td></tr>
<tr><td>10월</td></tr>
</table>

* 4, 5, 9, 10월의 일요일 경기 중 특정경기에 한해 경기개시 시간 변경 가능 또한,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홈구단이 요청할 경우 금요일에 한해 경기개시 시간을 19:00로 변경 가능함(경기개시일 2주전까지 변경 요청시)
* 개막전 2연전 – 3/28(토), 3/29(일) - 14:00
* 어린이날 - 14:00

(2019.3.19 ➜ 2019.7.19 개정)

제22조 경기시간 제한

1. 야간 조명시설이 없는 구장에서의 주간경기는 일몰시간 15분 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조명시설이 있는 구장에서는 점등한 후 경기를 속행한다.
2. 야간 조명시설이 없는 구장에서 암흑 또는 시간 제한으로 9회까지 경기속행이 불가능(일몰시간 제한)하게 되었을 경우 서스펜디드 경기로 한다.

제23조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1. 출장 예정 심판위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기관리인이 급히 비번의 심판위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출장할 수 있는 심판위원만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2. 심판위원 전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그 도착을 기다려 경기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 있다.
3. 심판위원의 정원이 부족한 채 경기가 개시된 후에 도착한 심판위원은 즉시 출장하여야 한다.
4. 심판위원이 한 명도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양 구단의 선수를 심판위원으로 충당하여 경기를 개시한다. 이 경우 심판위원이 경기 도중에 도착하면 즉시 심판위원으로 교체하여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주)양 구단의 선수를 심판위원으로 충당할 경우 양 구단의 감독들은 상호 상대편 선수 중에서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를 동수로 선정한다. 그리고 루심의 배정은 홈구단에서 주심과 2루심, 원정구단에서 1,3루심을 담당케 하며, 제복은 선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의는 점퍼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기록위원이 사고로 부재인 경우에는 경기관리인이 구단 기록원을 임시 공식기록원으로 지명한다.

제24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1. 규약, 리그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은 총재에 의해 엄중한 제재(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병과)가 가해진다. 제재가 가해질 때에는 벌칙내규에 따른다.
2. 전 항에 의해 제재금이 가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단을 통하여 KBO 사무국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불 완료일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지불 완료 다음 날부터 출장 가능).
3.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자는 제재 종료일까지 KBO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엔트리 말소는 가능).
4. 출장정지 제재 관련 경기수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장정지 제재 경기수는 KBO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즌 경기를 포함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나. KBO 정규시즌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제재 통보일부터 소속팀 정규시즌 경기수 거행 기준
   다. KBO 퓨처스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제재 통보일부터 해당 팀 퓨처스리그 경기수 거행 기준
   라. KBO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결정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엔트리에서 말소할 수 없다.
   마. 빈볼, 폭행, 도핑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소속팀에게도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재정신청의 절차

재정신청의 절차를 공식야구규칙 7.04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감독은 심판위원의 재정이 공식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위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하여는 어떤 재정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비디오 판독 대상은 경기 중 신청이 가능하다.

2. 감독이 경기를 재정신청하려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웃되기 전에 그 취지를 주심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재정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주심은 재정신청을 받은 후 재정신청 경기임을 기록위원에게 통고하고, 즉시 관객에게 장내방송을 통하여 알린 후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4. 재정신청 경기가 성립되면 재정신청 구단은 익일 17:00까지 재정신청 사유서를 KBO에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재정신청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재정신청은 자동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재정신청 사유서가 접수되면 총재는 재정신청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다음 필요한 경우 규칙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1. 벤치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
2. 경기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의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경기 중에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위 장비를 사용하여 감독, 코치, 선수에게 그 경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포수, 내야수, 외야수는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이 허용된다. 투수의 경우에는 벤치에 한해서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 사용이 허용

된다. 페이퍼와 리스트 밴드의 크기가 규격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상대팀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심판이 판단할 시 사용이 금지된다. 위와 같이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선수는 즉시 퇴장당한다.

3. 구단은 경기장 밖의 센터 후방 및 기타 장소에서 망원 카메라, 특수장비가 장착된 카메라 또는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상대 배터리의 사인 촬영을 금지한다.
4.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총재는 경고 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9.6.19 ➜ 2020.1.10 개정)

제27조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 여부

경기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황사 등의 기상 특보(경보 이상)가 발령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경기개시 전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개시 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경기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경기 중 경보 발령시 해당 이닝 종료 후 취소 결정).

1. 경기개시 전 :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 경기개시 후 : 해당 심판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19.3.13 개정)

기상 특보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강풍

가. 주의보 : 풍속 14m/s 이상,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나. 경보 :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② 폭염

가. 주의보 :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경보 :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미세먼지

가. 주의보 : PM2.5(초미세먼지) 75$\mu g/m^3$ 또는 PM10(미세먼지) 150$\mu 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나. 경보 : PM2.5(초미세먼지) 150$\mu g/m^3$ 또는 PM10(미세먼지) 300$\mu 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④ 황사

가. 주의보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나.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mu 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019.1.15 개정)

제28조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제도는 KBO 리그(시범경기,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에서 아래 3항(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다.

1. 비디오 판독 대상경기
   ① 중계가 편성되어 있는 경기에 한해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다.
   ② 비디오 판독은 중계용 영상 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판독센터에서 실시한다.
   ③ 중계가 없을 경우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④ 중계용 영상 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 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의한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심판의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감독은 심판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비디오 판독 장소 및 책임자, 판독인원
   ① 비디오 판독은 판독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비디오 판독의 책임자는 판독센터장이며 판독인원은 판독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인(비디오 판독 동시 발생시 1인으로 판독 진행 가능) 이내로 한다.
   ③ 심판팀장이 대기심일 경우 해당심판팀에서 심판팀장 외에 최고 경력을 가진 심판이 경기 중 심판팀장의 역할을 한다.
   ④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는 동안 그라운드에 남아있는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 이전의 판정이 내려진 상태로 양 구단 선수단을 위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⑤ 비디오 판독 실시 후 전달 받은 최종 결과는 심판팀장이 내린다.
3.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① 홈런에 대한 판정
   ②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단, 다음의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a)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서 태그 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b) 주자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로 향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c) 공식야구규칙 5.09(b)(2)에 의거하여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

(2019.1.15 개정)

④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⑤ 몸에 맞는 공

타자가 공에 맞았을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스윙을 했는지, 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

예)

투구가 배트에 맞았으나 심판은 몸에 맞는 공이라고 판정한다. 수비구단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여 심판팀장이 공이 배트에 맞았다고 최초 판정을 번복한다. 타구가 파울이었다면 심판팀장은 파울이라고 판정하고, 페어일 경우 타자주자의 위치를 배정하는데 있어 수비구단이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려고 시도했는지 여부, 타자주자가 진루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⑥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 또는 타자가 착용한 경기용구나 배트에 맞는 경우 포함)

(2017.8.14 개정)

⑦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⑧ 더블 플레이 시도시 슬라이딩 규정

* 공식야구규칙 6.01(j)에 대한 심판의 결정만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며 더블 플레이의 방해가 6.01(a)(6) 또는 (7)에 해당할 경우 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2019.1.15 개정)

⑨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 공식야구규칙 5.09(a)(8) 및 6.01(a)(10)에 의거하여 타자 또

는 주자가 수비하는 야수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2019.6.18 ➜ 2020.1.10 개정)

4. 비디오 판독의 신청

① 비디오 판독은 각 구단의 감독만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독이 부상, 질병, 퇴장 등 합당한 이유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총재에게 감독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된다고 통보한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신청한 경우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거부해야 한다.

④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은 해당심판팀의 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감독은 심판판정 후 30초 이내에 비디오 판독을 구두로써 심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심판은 오른손을 위로 들어 비디오 판독 신청이 있었음을 경기운영위원, 기록위원에게 시그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심판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신청이 적절한 시간 안에 이루어 졌는지 판단하여 비디오 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감독의 신청이 늦었을 경우 심판은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⑦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심판팀장은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구단을 덕아웃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2018.3.5 규칙위원회)

⑧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심판팀장은 수비구단 선수들이 필드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2018.3.5 규칙위원회)

⑨ 플레이 종료 후 투수교체를 하는 경우 수비구단 감독은 투수교체 사인을 내기 전에 비디오 판독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공격구단 감독은 새로 경기에 들어올 구원투수가 워닝트랙을 밟기 전이나 필드에 불펜이 있는 구장의 경우 파울라인을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수비구단 감독이 공격구단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서둘러 구원투수를 투입할 경우 심판팀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격구단 감독에게 비디오 판독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⑩ 심판이 비디오 판독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는 선수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5. 비디오 판독의 기회

① 기회는 심판의 판정번복 여부와 관계없이 2번으로 한다. 연장전에 한해 구단당 1번의 기회가 추가된다.

(2018.7.4 ➜ 2019.1.15 ➜ 2019.12.16 개정)

② 홈런 타구 비디오 판독은 감독에게 주어진 2번의 기회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만약 감독이 대상이 아닌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심판팀장은 감독에게 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구단은 비디오 판독 기회를 유지한다. 감독이 요청한 플레이가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는지 확신하지 못할 경우 심판팀장은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심판과 의논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은 두 가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하여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감독의 기회는 각각

의 플레이에 대한 기회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

1사 1루 상황. 타자가 2루수 앞 땅볼을 쳤다. 심판은 1루주자가 2루에서 아웃되고 타자주자도 1루에서 아웃되었다고 판정한다.

이 때 공격팀 감독은 2루 아웃, 1루 아웃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감독은 2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비디오 판독의 절차

① 비디오 판독에 참여하는 판독위원은 판독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한다.

② 감독으로부터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받은 심판은 심판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경기운영위원, 기록위원에게 시그널로 통보하고, 기록위원은 이를 방송해야 한다. 이 사이 해당루심과 심판팀장(심판팀장이 해당루심인 경우 최고 경력을 가진 심판)은 운영요원으로부터 인터컴 장비를 전달 받아 착용하고 판독센터의 판독 결과를 수신한다.

비디오 판독이 시작된 후 3분 안에 판정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심 유지로 판정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판독이 지연되거나 복합적인 규칙 등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독시간 3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디오 판독시간은 심판팀장이 인터컴 장비를 착용하는 시점부터 벗는 시점까지로 계측한다.

(2018.1.24 규칙위원회 ➜ 2019.12.16 개정)

③ 심판팀장은 판정번복 여부를 심판과 기록위원에게 통보하

고, 만약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초 판정이 번복되었다면 주자의 위치 배정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심판팀장은 이를 기록위원을 통해 방송하도록 해야 하며, 양 구단 감독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7. 경기의 지연 및 제재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감독, 코치, 선수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해당 구단의 비디오 판독 결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심판은 감독에게 즉시 비디오 판독 기회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경고할 수 있다. 심판의 경고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을 시킨다면 심판팀장은 재량으로 해당 구단의 비디오 판독 기회를 소멸시킬 수 있다.

총재는 이 조항을 위반한 구단을 추후 제재할 수 있다.

8. 양 구단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①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구단 감독 모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디오 판독은 요청한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먼저 비디오 판독된 판정에 대해 심판팀장이 내린 결정이 그 뒤에 판정을 판독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심판팀장은 그 뒤의 비디오 판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구단에서 요청한 기회가 비디오 판독되지 않았다면 해당 구단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없던 것이 되며 그 구단의 비디오 판독 기회는 유지된다.

③ 만약 양 구단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구단은 해당루심과 심판팀장(심판팀장이 해당루심인 경우 최고 경력을 가진 심

판)이 인터컴 장비를 착용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심판팀장의 최초 판정번복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구단의 감독은 심판팀장에게 같은 플레이 안에서 비디오 판독이 가능한 다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예1)
2사 주자 없는 상황. 타자가 외야로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를 쳤다.
심판은 이 공이 그라운드에 먼저 바운드 된 후 야수의 글러브로 들어갔다고 판정하고, 이 때 2루까지 진루하려던 타자주자는 2루에서 아웃된다.
수비구단은 타자주자가 2루에서 아웃되며 이닝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타자가 타격한 라인드라이브성 타구가 바운드가 먼저 되고 글러브로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만약 공격구단이 2루에서 타자주자가 태그 아웃된 플레이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심판팀장이 이를 번복한다면, 수비구단은 심판팀장의 번복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외야에서 타자의 타구가 바운드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예2)
2사 주자 1루 상황. 타자가 외야로 플라이볼을 치고 이 타구는 수비수가 포구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주자는 3루까지 진루하려는 과정에서 3루에서 아웃이 선언되며 이닝이 종료된다.
공격구단 감독은 3루에서의 플레이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심판팀장은 이를 세이프로 번복한다.
그러자 수비구단 감독은 수비수가 포구하지 못했던 외야 플

라이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심판팀장은 이를 이닝의 3번째 아웃이 되는 플라이 타구라고 번복한다.
이 경우 타자의 플라이 타구가 외야에서 포구되며 3아웃으로 이닝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3루에서 있었던 플레이에 대한 이전의 비디오 판독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3루에서 있었던 플레이에 대한 이전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무효로 간주된다.

9. 비디오 판독 후 감독의 결정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 판정이 번복되면 플레이 이후 잘못된 판정으로 영향을 받아 내려진 감독의 결정은 무효화된다. 이 경우 감독은 심판팀장이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인 결정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다.

예1)

플레이가 이루어진 후 수비구단 감독이 투수교체 사인을 낸 직후 공격구단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다.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번복된다. 이 때 심판팀장의 결정이 발표된 후 수비구단 감독은 직전에 이루어졌던 투수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예2)

무사 주자 3루 상황. 타자가 투수의 투구에 스윙을 하면서 배트가 포수의 글러브를 쳤고 포수의 방해가 선언된다.
스윙을 하면서 타격한 공은 좌측 외야로 날아가 포구된다.
3루주자는 이 때 태그 업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홈에서 득점한다.
공식야구규칙 5.05(b)(3)에 따르면 포수의 방해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공격구단 감독은 방해 페널티(타자는 1루로 진루권을 얻고 주자는 3루로 돌아간다) 또는 플레이의 결과(타자는 아웃, 3루주자는 득점) 중 선택할 수 있다.
공격구단 감독은 플레이의 결과를 선택하기로 한다.
수비구단 감독은 3루주자가 홈에서 득점했을 때의 판정에 대

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고 심판팀장이 최초 판정을 번복해 주자가 홈에서 아웃된다. 심판팀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최종 결과를 알게 되면, 공격구단 감독은 플레이의 결과를 택하기로 했던 최초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포수의 방해, 타자의 방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

10. 비디오 판독의 특수성

감독이 비디오 판독 기회를 사용할 경우 감독은 어느 특정 판정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원하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예)

1루에서 벌어진 포스 플레이의 '아웃'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감독은 '송구를 받는 수비수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다, 공이 1루에 닿기 전 주자가 먼저 베이스를 밟았다' 등의 얘기를 할 필요 없다.

또한 감독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판정에 대해서는 판독센터에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을 때 심판이 수비수가 태그를 못했다고 판정하고 주자의 세이프를 선언한다.

수비구단은 이 최초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다. 심판팀장은 수비수가 주자를 태그하지 못한 것을 재확인했으나 세이프로 선언된 주자가 선행주자에 의해 추월당하는, 공식야구규칙 5.09(b)(9)의 위반을 발견한다. 감독은 오직 태그 플레이에 관해서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기 때문에 심판팀장은 추월주자에 관해 심판이 판정하지 않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스리피트 위반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

11. 비디오 판독 신청 및 결과는 최종적

① 감독이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심판팀장이 비디오 판독에 의해 결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판정에 대한 판정 유지나 번복, 그리고 주자의 위치 배정 등 필요에 의해 실시된 모든 행위는 최종이고 양 구단에 적용되며 이는 더 이상의 검토나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면 선수단 및 양 구단의 관계자는 더 이상 심판팀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심판은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퇴장을 명한다.

④ 심판팀장이 결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가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어떤 규칙이나 절차의 위반도 경기제소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예 : 플레이가 대상이 아니거나, 심판팀장이 비디오 판독 사용 요청을 거부함)에서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논란이 되는 판정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화면을 봤다는 언급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경기에서 즉각 퇴장의 대상이 된다.

12. 비디오 판독의 정정

비디오 판독 결과 최초의 판정이 번복된다면, 심판팀장은 처음부터 옳은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양 구단이 위치해야 할 상황을 만들도록 정정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서 번복되는 모든 판정에서 나오는 주자의 배치에 대한 결정은 공식야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팀장이 결정한다.

① 주자를 배치할 때는 플라이볼의 깊이, 주자의 스피드,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때 주자의 위치, 아웃카운트, 잘못된 판정이 공격 또는 수비구단 선수들의 이어지는 행동이나 위치에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심판팀장이 잘못된 판정으로 공격, 수비구단 선수들의 이어지는 행동이나 처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판정은 바꾸지만 영향 받지 않은 주자들의 위치에 대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한다.

③ 심판팀장은 판정이 옳게 내려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구단의 득점을 인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④ 주자의 위치 배정이나 주자 아웃 선언, 득점 및 득점 무효에 대한 심판팀장의 결정은 최종이며 양 구단에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논란하거나 항의하는 감독 및 구단 관계자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13. 비디오 판독 중계화면의 전광판 상영

비디오 판독시 구단은 전광판에 중계 리플레이 또는 판독화면을 상영할 수 있다.

(2018.3.5 규칙위원회)

14. 공식기록원

심판팀장은 비디오 판독시 공식야구규칙 9조의 적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공식기록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017.2.7 개정)

제29조 의무

홈구단은 경기가 열리는 당일 홈구단 연습 시작 시간(경기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객이 퇴장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의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기장 내에 의무실 설치
2. 의무실에 의사(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전문가)와 간호사 각 1인 배치
3. 의무실 내에 산소호흡기 및 들것 비치
4.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응급후송차량 대기

그라운드에서 선수 부상 및 관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의 신속한 치료 및 이동을 위하여 응급후송차량의 그라운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응급조치병원 지정
6.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을 제재할 수 있다.

제2장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제30조 경기방식

1. KBO 정규시즌 승률 4위구단과 5위구단간에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대 2경기를 거행한다.
   최대 2경기 가운데 4위구단이 1승 또는 1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4위구단이 KBO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5위구단은 2승을 기록해야 진출할 수 있다.
2. 연장전에 들어간 경우 정규시즌 5위구단이 15회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4위구단의 진출이 결정되면 15회말은 거행하지 않으며, 5위구단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구단의 15회말 공격 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운영관리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KBO가 이를 주관하며, 구장관리는 4위구단이 한다. 이 경기에서 발생하는 KBO 규약 및 공식야구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사항은 총재가 결정 처리한다.

제32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1. 순서

차전	경기장
1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4위구단 홈구장
2차전	

2. 우천,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또는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중지된 경기는 승률 4위구단 구장에서 순연으로 거행한다.

제33조 경기

1. 모든 경기진행은 KBO가 관장한다.
2. 출장자격은 KBO 한국시리즈에 준한다.
3. 구장 상태, 일기, 기타 사유로 인한 경기개시 여부는 총재가 이를 결정한다.
4. 입장요금은 KBO 포스트시즌 경기요금에 준한다.

제3장 KBO 준플레이오프

제34조 경기방식

KBO 정규시즌 승률 3위구단과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구단 간에 3선승제를 거행한다.

제35조 운영관리

KBO 준플레이오프는 KBO가 이를 주관하며, 구장관리는 홈구단이 한다. 이 경기에서 발생하는 KBO 규약 및 공식야구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사항은 총재가 결정 처리한다.

제36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1. 순서

차전	경기장
1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3위구단 홈구장
2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3위구단 홈구장
	이동일
3차전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구단 홈구장
4차전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구단 홈구장
	이동일
5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3위구단 홈구장

2. 우천,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또는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중지된 경기는 예정된 구장에서 순연으로 거행한다. 무승부 경기는 5차전이 끝난 후에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연전으로 거행한다(2무승부 이상 발생시 1일 이동 후 연전으로 거행).

제37조 경기

1. 모든 경기진행은 KBO가 관장한다.
2. 출장자격은 KBO 한국시리즈에 준한다.
3. 구장 상태, 일기, 기타 사유로 인한 경기개시 여부는 총재가 이를 결정한다.
4. 입장요금은 KBO 포스트시즌 경기요금에 준한다.

제4장 KBO 플레이오프

제38조 경기방식

KBO 정규시즌 승률 2위구단과 KBO 준플레이오프 승리구단간에 3선승제를 거행한다.

제39조 운영관리

KBO 플레이오프는 KBO가 이를 주관하며, 구장관리는 홈구단이 한다. 이 경기에서 발생하는 KBO 규약 및 공식야구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사항은 총재가 결정 처리한다.

제40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1. 순서

차전	경기장
1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2위구단 홈구장
2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2위구단 홈구장
	이동일
3차전	KBO 준플레이오프 승리구단 홈구장
4차전	KBO 준플레이오프 승리구단 홈구장
	이동일
5차전	KBO 정규시즌 승률 2위구단 홈구장

2. 우천,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또는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중지된 경기는 예정된 구장에서 순연으로 거행한다. 무승부 경기는 5차전이 끝난 후에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연전으로 거행한다(2무승부 이상 발생시 1일 이동 후 연전으로 거행).

제41조 경기

1. 모든 경기진행은 KBO가 관장한다.
2. 출장자격은 KBO 한국시리즈에 준한다.
3. 구장 상태, 일기, 기타 사유로 인한 경기개시 여부는 총재가 이를 결정한다.
4. 입장요금은 KBO 포스트시즌 경기요금에 준한다.

제5장 KBO 한국시리즈

제42조 경기방식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과 KBO 플레이오프 승리구단간에 4선승제를 거행한다.

제43조 운영관리

KBO 한국시리즈는 KBO가 이를 주관하며, 구장관리는 홈구단이 한다. 이 경기에서 발생하는 KBO 규약 및 공식야구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사항은 총재가 결정 처리한다.

제44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

1. 순서

차전	경기장
1차전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2차전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이동일
3차전	KBO 플레이오프 승리구단 홈구장
4차전	KBO 플레이오프 승리구단 홈구장
	이동일
5차전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6차전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7차전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 홈구장

(2020.1.10 개정)

2. 우천,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또는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중지된 경기는 예정된 구장에서 순연으로 거행한다.

무승부 경기는 7차전이 끝난 후에 이동일 없이 무승부 경기가 발생한 구장에서 거행하고 무승부가 발생한 경기의 홈구단이 당해 구장을 홈으로 사용한다(2무승부 이상 발생시 1일 이동일 후 연전으로 거행).

3. 서스펜디드 경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기를 진행한다.
   ① 다음 날 동일대진일 경우 - 다음 날 경기 이전에 거행
   ② 다음 날 이동일일 경우 - 이동일 경기거행
   (전체적 일정 1일씩 순연)
   ③ 최종 경기일 경우 - 다음 날 또는 이동일 거행
   (전체적 일정 1일씩 순연)
   ④ 입장요금
   가. 정식경기 성립시 - 환불 없음, 다음날 해당 입장권으로 입장 가능
   나. 정식경기 불성립시 - 환불 또는 다음날 해당 입장권으로 입장 가능

제45조 출장자격

1. KBO 한국시리즈에 출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는 7월 31일 현재 그 구단의 선수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
   (단, 7월 31일 이후라도 군제대선수 및 8월 15일까지 등록된 외국인선수에 한하여 출장 가능)
2. KBO 한국시리즈(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KBO 준플레이오프, KBO 플레이오프 포함)의 각 경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구단당 선수 30명(출장 28명), 감독 1명, 코치 8명으로 하며 매 경기 출장선수 28명 명단을 경기개시 3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 또는 코치가 선수를 겸할 경우는 선수수에 포함한다. (2017.7.25 개정)

3. KBO 한국시리즈에 출장하는 구단은 KBO 한국시리즈 개시 1일 전까지(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KBO 준플레이오프, KBO 플레이오프 1일 전) 출장자격이 있는 선수, 감독 및 코치의 명단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재는 명단을 검토 후 해당 구단의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KBO 준플레이오프, KBO 플레이오프 및 KBO 한국시리즈 진출이 결정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총재가 명단을 공시한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017.7.25 개정)

제46조 경기

1. 모든 경기진행은 KBO가 관장한다.
2. 구단의 여비, 숙박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해당 구단이 부담한다.
3. 구장 상태, 일기, 기타 사유로 인한 경기개시 여부는 총재가 이를 결정한다.

제47조 수입금의 분배

KBO 포스트시즌 배당금의 20%를 KBO 정규시즌 우승구단 상금으로 시상하고, 나머지 분배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배당한다.

순위	분배율(%)
KBO 한국시리즈 우승	50
KBO 한국시리즈 준우승	24
KBO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	14
KBO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	9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구단	3

(2017.4.18 개정)

제48조 입장요금(KBO 포스트시즌 경기)

KBO 포스트시즌 경기의 입장요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KBO 올스타전

제49조 운영관리

KBO 올스타전은 KBO가 이를 주관하며 구장관리는 홈구단이 한다. 이 경기에서 발생하는 KBO 규약 및 공식야구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사항은 총재가 결정 처리한다.

제50조 편성

1. 10개 구단을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로 양분한다.
   드림 올스타는 두산, SK, KT, 삼성, 롯데
   나눔 올스타는 키움, LG, NC, KIA, 한화
2. 선공은 나눔 올스타로 한다.

제51조 구성

1. 각 올스타의 선수 베스트12(지명타자 포함)는 KBO가 위치별로 팬 인기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비율로 환산한 최다 득점자가 선발된다. 선임감독은 베스트12를 제외한 13명을 감독추천 선수로 지명 선정한다.
2. 양 올스타의 감독 선정은 2019년도 구단 성적 순위 상위구단(드림 올스타 : 두산베어스, 나눔 올스타 : 키움히어로즈)의 감독이 선임되고, 코치(드림 올스타 4명, 나눔 올스타 4명)는 기타 구단의 감독으로 한다.

각 올스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드림 올스타
(두산, SK, KT, 삼성, 롯데)</th><th colspan="2">나눔 올스타
(키움, LG, NC, KIA, 한화)</th></tr>
<tr><td colspan="2">감독</td><td colspan="2">1명
(두산 감독)</td><td colspan="2">1명
(키움 감독)</td></tr>
<tr><td colspan="2">코치</td><td colspan="2">4명
(SK, KT, 삼성, 롯데 감독)</td><td colspan="2">4명
(LG, NC, KIA, 한화 감독)</td></tr>
<tr><td rowspan="7">선수</td><td>위치</td><td>베스트12</td><td>추천선수</td><td>베스트12</td><td>추천선수</td></tr>
<tr><td>투수</td><td>3명</td><td>7명</td><td>3명</td><td>7명</td></tr>
<tr><td>포수</td><td>1명</td><td>2명</td><td>1명</td><td>2명</td></tr>
<tr><td>내야수</td><td>4명</td><td>2명</td><td>4명</td><td>2명</td></tr>
<tr><td>외야수</td><td>3명</td><td>2명</td><td>3명</td><td>2명</td></tr>
<tr><td>지명타자</td><td>1명</td><td>–</td><td>1명</td><td>–</td></tr>
<tr><td>합계</td><td colspan="2">25명</td><td colspan="2">25명</td></tr>
<tr><td colspan="2">매니저</td><td colspan="2" rowspan="4">각 1명(두산)</td><td colspan="2" rowspan="4">각 1명(키움)</td></tr>
<tr><td colspan="2">트레이너</td></tr>
<tr><td colspan="2">기록원</td></tr>
<tr><td colspan="2">통역
(외국인선수
출전시)</td></tr>
<tr><td colspan="2">합계</td><td colspan="2">34명</td><td colspan="2">34명</td></tr>
</table>

(2019.12.16 개정)

제52조 수상자 선출방법

미스터 올스타(MVP)는 기자단 투표로 선정하며 기타 부문의 수상자는 기록에 따른다.

미스터 올스타(MVP) - 기자단 투표

우수선수상 2명 - 기록 의거(투수 1명, 타자 1명)

감투상 - 기록 의거
승리감독상 - 승리 올스타팀 감독

제53조 세칙

1. 베스트12에 선발된 선수는 반드시 선발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부상 등으로 인하여 출전할 수 없을 경우 감독은 해당 위치의 최다 득점 2위 선수를 대체 출전선수로 선발한다.
2. 연장전은 10회부터 이닝 제한 없이 승부치기를 거행한다.
3. 우천일 경우 순연한다.

(2019.12.16 개정)

제54조 경기수당

1. KBO 올스타전에 출장한 선수, 감독 및 코치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출장수당을 지급하고, 매니저, 트레이너, 덕아웃 기록원, 통역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승리 올스타팀에게는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2. 선수, 감독 및 코치, 매니저, 트레이너, 덕아웃 기록원, 통역에 대하여 대회기간 30만원(2일분)의 숙식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는 구단 부담)
   단, 우천으로 경기가 연기될 경우 해당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5조 경기장 집합시간

선공 올스타 선수·감독 및 코치는 경기개시 3시간 30분 전에, 후공 올스타 선수·감독 및 코치는 경기개시 2시간 전에 각각 해당 운동장 선수대기실로 집합하여야 한다.

제56조 대회불참 처벌

KBO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는 KBO 규약 제28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57조 경기사용구 및 연습구

1. 경기사용구는 KBO에서 공급 관리한다.
2. 각 올스타팀에서 사용할 연습구는 감독 소속구단에서 공급한다. 해당 구단은 경기개시 3시간 전까지 운동장 내 대회본부로 연습구 100개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7장 KBO 퓨처스리그

제58조 리그편성

북부 : 한화, LG, 두산, 고양(히어로즈), SK
남부 : 상무, KT, KIA, 롯데, 삼성, NC

제59조 경기방식

1. 공식경기
   북부리그는 260경기, 남부리그는 345경기씩 총 605경기를 거행한다.
   ① 북부리그 : 팀당 104경기
   (동일리그 구단간 17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② 남부리그 : 팀당 115경기
   (동일리그 구단간 17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2. 번외경기(기록 별도 관리)
   ① NPB 소프트뱅크 호크스(총 9경기)
   : 롯데, 삼성, NC 구단은 NPB 소프트뱅크 호크스 3군과 홈경기장에서 3연전을 거행한다.
3.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로 한다.

제60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1. KBO 퓨처스리그는 3월부터 9월까지 거행한다.
2. 우천 및 기타 사정으로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하지 않는다.

(2019.11.4 개정)

제61조 홈구단의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

제1장 제6조 준용

제62조 경기불참가에 대한 벌칙

제1장 제7조 준용

제63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조치

제1장 제8조 준용

제64조 경기관리인

제1장 제9조 준용

제65조 안전보장

제1장 제10조 준용

제66조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1. 일기 또는 그라운드 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경기거행 여부는 심판위원이 경기개시 2시간 전에 경기장에서 직접 결정한다.
2. 경기실시의 결정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예정 시간으로 한다.

제67조 심판위원수

심판은 4심제(2심 또는 3심제)로 한다.

제68조 출장자격

1. KBO 퓨처스리그 현역선수 명단(26명)에 등록된 자 (상무 포함)

2. KBO 리그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는 언제든지 KBO 퓨처스리그 현역선수 명단의 등록이 가능하다. 단, KBO 퓨처스리그 현역선수의 등록은 경기시작 90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말소된 선수는 말소신청 시간부터 KBO 퓨처스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

(2017.1.10 개정)

KBO 퓨처스리그 현역선수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KBO 리그에 등록할 경우 당일 KBO 퓨처스리그와 KBO 리그 경기 모두 출장이 가능하다.

3. 코치 겸 선수, 선수로 등록된 자는 베이스코치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
4. 현역선수등록은 26명으로 한다.
   단, 현역선수등록 및 말소는 경기개시 90분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대구단 감독 동의하에 30분 전까지 변경 가능하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없다.
   ①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인해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
   ②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야구단에 입대한 선수
   단, 국내 프로구단을 거치지 않고 해외진출한 병역미필선수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어12 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한 경우 국내 복귀를 조건으로 상무야구단에 입대하여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6.10.11 개정)

제69조 경기사용구와 관리

홈구단은 경기사용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70조 입장요금

입장요금은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1조 경기중지에 따른 입장요금 처리

노게임이 선언되었을 때 동일구장의 다음 경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72조 경기개시 시간

① 전 경기 13:00
(단, 7, 8월 경기가 야간경기로 편성될 경우 18:00에 거행)

②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경기개시 시간을 11:00와 16:00 및 야간경기로 변경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일과 구단 사정으로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경기의 7일 전에 확정하여 KBO에 통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7, 8월 경기는 3일 전에 KBO에 통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3.7 ➜ 2017.1.10 ➜ 2019.3.15 개정)

제73조 경기시간 제한

일몰시간 15분 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제74조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제1장 제23조 준용

제75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제1장 제24조 준용

제76조 경기제도

1. 공식야구규칙 7.02 및 용어의 정의 74에 규정된 서스펜디드 경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닝의 도중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이닝을 무효로 한다.
2. 퓨처스리그에서는 공식야구규칙 5.11에 규정된 것과 달리 경기 전 제출된 타순표에 지명타자로 기재되어 있는 선수가 KBO 리그 현역선수 등록 등 부득이할 경우 선발투수를 상대로 적어도 한 번의 타격을 하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하다.

(2019.1.15 개정)

제77조 시상

투수 부문 - 평균자책점상, 승리상
타자 부문 - 타율상, 홈런상, 타점상을
북부, 남부리그로 나누어 시상한다.
(공식야구규칙 9.22에 의거 선정)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룰

구분	적용 내용
파울지역	①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맞은 경우 → **파울** ②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낀 경우 → **파울** ③ 홈베이스 위쪽 천장에 낀 경우 → **파울**
내야 페어지역	①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 → **아웃** ②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낀 경우 → **볼데드** (타자, 주자 → 안전진루권 2개루) ③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하지 못했을 경우 → **인플레이**
외야 페어지역	타구가 천장 상단 3번째 통로(캣워크) 시작점 이후부터 천장 또는 시설물(스피커, 홍보물 등)에 맞거나 낀 경우 → **홈런**
기타	천장에 맞거나 낀 경우 등 확인이 필요한 판정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비디오 판독 신청 가능

(2018.1.24 규칙위원회)

* 내, 외야 페어지역 구분 - 천장 상단 3번째 통로(캣워크) 시작점

2020년 구단별 경기관리인, 경기관리 대리인, 스피드업 및 도핑 · 경기사용구 담당자

구단	경기관리인		경기관리 대리인		스피드업 담당자		도핑 담당자		경기사용구 담당자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두산	김태룡	단장	김승호	부장	김승호	부장	천종민	코치	김대진	대리
키움	김치현	단장	고선기	팀장	고선기	팀장	이건우	코치	이형철	매니저
SK	손차훈	단장	진상봉	그룹장	진상봉	그룹장	김기태	코치	남기남	매니저
LG	차명석	단장	고동현	팀장	정택기	팀장	김종욱	코치	김명환	책임
NC	김종문	단장	장동철	팀장	장동철	팀장	김성중	트레이너	윤지훈	매니저
KT	이숭용	단장	최재영	팀장	최재영	팀장	이정훈	대리	이성권	대리
KIA	조계현	단장	이석범	팀장	이석범	팀장	배요한	코치	도영빈	매니저
삼성	홍준학	단장	심창섭	팀장	박재영	팀장	윤성철	코치	신동걸	프로
한화	정민철	단장	석장현	팀장	석장현	팀장	배민규	코치	구현준	대리
롯데	성민규	단장	박준혁	팀장	서영대	매니저	김종훈	트레이너	김정환	사원

경기의 스피드업

경기의 스피드업을 통하여 경기시간을 단축하고, 관객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하기 위하여 구단,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및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참여한다.

1. 구단

① 심판위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경기 중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수석코치를 포함한 모든 코치의 동행을 금지한다. 이후 감독 어필이 시비로 인해 길어질 경우 수석코치는 나가서 만류할 수 있으나 어필할 수 없다. 어필할 경우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어필이 계속될 경우에는 수석코치에게 퇴장을 명한다.

③ 항의가 3분 이상 계속될 경우 감독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5분이 경과될 경우에는 감독에게 퇴장을 명한다.

④ 감독이 어필 도중 또는 어필 종료 후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철수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감독을 즉시 퇴장시킨다.

(2009.6.29 규칙위원회)

⑤ 공격구단은 작전을 위하여 한 이닝에 2번 이상 타임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비구단이 경기 중 타임을 요구하여 투수 마운드에서 작전회의를 할 때에는 30초 이내로 한다.

⑦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정규이닝 기준 경기당 2회까지 허용하며 연장전 진행시 1회 추가 허용한다(위반시 포수교체).

(2003.11.26 감독자 합의, 2018.3.5 규칙위원회)

⑧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갔을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야수가 투수 마운드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⑨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위원은 불응해야 한다.
⑩ 경기 중 경기사용구를 관객에게 던지는 선수에게는 제재금을 과한다.
⑪ 벤치 밖에는 일체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⑫ 경기 중 1,3루 코치의 스톱워치 사용을 금지한다.

2. 공수교대

① 공수교대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전력 질주한다.
② 전 이닝의 마지막 아웃이 되는 순간부터 다음 이닝 첫 번째 공이 투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분으로 한다. 이닝 교대시간 1분 30초가 경과된 후 주심이 투수와 포수, 대기 타석에 있는 타자에게 수신호로 마지막 연습투구라는 최종 시그널을 준다.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공수교대시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관객난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닝 교대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이닝 교대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전광판과 덕아웃, 홈 플레이트 뒤편에 함께 연동되는 시계를 설치하고 이닝 교대시간 2분을 표시한다. 2분은 제3아웃이 되고 수비가 덕아웃을 향하여 움직일 때부터 시작되며 표시는 0초에서 시간순으로 한다.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면 시계를 멈춘다.
단, 2분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
* 공격구단, 수비구단 선수교체, 이의제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심의 재량으로 이닝 교대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2003.11.26, 2006.4.4 감독자 합의)

③ 수비구단은 이닝 교대시 연습투구 종료와 동시에 라운딩을 시작한다.

④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는 2분 종료 후 첫 투구를 곧바로 진행한다.

⑤ 포수가 준비하는 동안 보조 포수나 코치가 투수의 웜업을 신속하게 도와준다.

⑥ 클리닝 타임은 4분을 넘기지 않는다.
2분 30초에 심판은 운동장에서 준비한다.
심판 중 1명은 신속한 그라운드 정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독려한다.

3. 투수교체

① 경기 중 투수교체시 해당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한다. 이닝 도중 투수교체 시간은 2분 20초이다. 주심은 투수의 준비투구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2분에 마지막 연습투구를 할 것을 지시한다.
투수의 갑작스런 퇴장 또는 부상으로 투수교체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투수교체 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전광판과 덕아웃, 홈 플레이트 뒤편에 함께 연동되는 시계를 설치하고 투수교체 시간 2분 20초를 표시한다. 2분 20초는 주심이 기록원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시작되며 표시는 0초에서 시간순으로 한다. 투수가 연습투구를 끝낸 후 시계를 멈춘다.
단, 2분 20초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연습투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

(2017.2.2, 2018.3.5 규칙위원회)

②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투수교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2회까지로 한다(위반시 투수교체). 단, 투수가 타구에 맞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은 마운드 방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벤치에서 타임 요청 후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포수가 올라갔을 경우
  : 감독 또는 코치 1번
-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 또는 코치가 올라갔을 경우
  : 감독 또는 코치, 포수 각 1번

(2001.7.16, 2003.11.26, 2018.3.22 감독자 합의)

③ 한 투수에게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두 번 올라갈 경우 반드시 투수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감독 또는 코치는 즉각 심판위원에게 다음 투수를 통보하고, 등판예정 투수는 감독 또는 코치와 함께 동시에 마운드로 향한다.

4. 투수

① 이닝 교대(2분) 및 투수교체 시간(2분 20초) 이내에 한해 투수의 준비투구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8.3.5 규칙위원회)

② 투수는 포수로부터 공을 받으면 투수판을 밟고 사인을 교환하고 즉시 투구하여야 한다.

③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고 볼로 판정한다.

시간 계측을 위하여 2루심에게 초시계를 휴대시키며 2루심의 계측은 투수가 공을 받은 후 타자가 타석에서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며 계측이 끝나는 시점은 투수가 자유로운 다

리를 드는 순간으로 한다.

(2003.11.26 감독자 합의, 2018.3.5 규칙위원회)

④ 투수는 불필요한 견제구를 자제한다.

⑤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타자 타이밍을 뺏는 지연행위시 주심이 판단하여 타임 선언 후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보크로 판정한다.

⑥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

⑦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

⑧ 경기 중에 불필요한 볼 교환을 금지한다. 한 이닝에 투수 1명당 처음 주심이 던져준 새 공을 제외하고 투수의 새 공 교환은 3개까지로 한다(단, 우천시 제외).

(2003.11.26, 2006.4.4, 2018.12.10 감독자 합의)

⑨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4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투수가 별도로 투구하지 않더라도 볼넷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동 고의4구 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린다.

(2018.3.5 규칙위원회)

5. 타자

①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은 불허하고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한다. 위반시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

a.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b.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경우
c.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d. 양 구단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경우
e.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f.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g.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h.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i. 포수가 수비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경우
j.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경우
k.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l.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

(2003.11.26, 2006.4.4 감독자 합의, 2018.11.16 규칙위원회)

② 타석에 있는 타자는 덕아웃이나 작전코치의 사인을 보기 위해 타석을 벗어나지 않는다.

③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는 2개의 배트를 여분으로 미리 준비한다.

(2018.3.5 규칙위원회)

④ 대기 타석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타석에 있는 선수의 다음 타자만으로 제한한다.

(2002.7.29 수석코치 합의)

⑤ 대기타자 및 대타자는 신속하게 타석으로 이동한다.

⑥ 홈구단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 원정구단 타자는 장내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내로 타석에 들어와야 한다. 위반시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타자 소개 후 대타나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⑦ 경기 도중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한다.

⑧ 주심은 타자가 적극적으로 투구를 피하지 않고 고의로 맞았을 경우 해당타자에게 몸에 맞는 공을 선언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경우 스트라이크로 선언하고, 볼을 맞았을 경우 볼로 선언한다.

⑨ 타자는 볼넷이나 死구시 보호대 등의 용구를 타석에서 탈착한 후 뛰어서 1루에 출루한다(타자 부상시 제외).

(2017.2.2 규칙위원회)

6. 기타

① 경기개시 이후 각종 시상식은 금지된다.

② 스피드업을 위하여 감독, 코치, 선수가 적극 참여한다.

③ KBO는 경기 스피드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경기 스피드업 조항을 위반한 선수의 자료를 구단에 통보하고 월 1회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경기시간 10분 단축을 모토로 삼고, 시즌 전 선수단에 경기 스피드업을 위한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④ 덕아웃과 라커룸에 경기 스피드업 핵심사항을 부착한다.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

1.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비신사적인 플레이, 고의적 빈볼투구 및 슬라이딩시 발을 높이 드는 행위 등 금지
2. 욕설, 침 뱉는 행위 금지
3. 경기 중 씹는 담배의 휴대 및 사용 금지
4. 경기 중 관객, 심판, 상대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 금지
5. 경기 중 심판, 상대구단 선수단에게 친목적 태도 금지
6. 덕아웃, 경기장 내에서 유니폼 및 덕아웃자켓 이외 복장 금지 (반바지, 슬리퍼 등 착용 자제)
7. 유니폼 착용 후 관객이 볼 수 있는 곳에서의 흡연 금지
8. 끝내기 홈런, 안타 등을 기록한 선수에게 과도한 환대행위 금지 (물통, 물병, 쓰레기통 등을 사용하는 행위, 헬멧으로 때리는 행위 등)
9. 헬멧, 모자 등 야구용품에 지나친 개인 편향의 표현 및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 금지
10. 경기개시 직전에 애국가가 방송될 때 벤치 내에 있는 선수는 벤치 앞에 나와 정렬하며, 기타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위원과 선수는 모자를 벗고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는다.
    연주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 돌출행동 금지
11. 과도한 문신의 외부노출 금지

벌칙내규

※ 총재는 본 KBO의 벌칙내규에 따라 구단, 감독, 코치, 심판위원, 기타 관련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1. 구단 : 경고, 제재금, 기타 경기규칙에 준하여 제재
2. 개인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제재금과 출장정지를 병과하여 제재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경고를 포함하여 1회 이상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 코치, 선수

1.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 당했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
   단, 퇴장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경우 다른 제재는 과하지 않는다.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 또는 심판위원을 구타하여 퇴장 당했을 때
   제재 :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3.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퇴장 당했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4.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빈볼과 폭행 등의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 당했을 때
   제재 :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5. 감독 또는 코치가 선수의 빈볼투구와 관련 지시 및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간주되었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6.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관객과 싸우거나 스탠드에 뛰어들어가서 소란을 피워 퇴장 당했을 때
   제재 :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7.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재 :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8.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중 관객들의 질서문란행위를 선동 또는 야기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9.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을 통하여 (i) KBO, 구단 또는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나 리그 관계자를 모욕 내지 비방할 때, (ii)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을 할 때, 또는 (iii)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 감독, 코치가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 때
제재 :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20경기 이하

심판위원

1. 야구규칙 적용을 잘못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50만원 이하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제재 :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3. 관객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해 심판위원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4. 심한 오심이 거듭될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5. 심판위원이 폭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재 :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6. 감독, 코치, 선수 또는 구단 관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7.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200만원 이하
8. 구단 사무실 또는 구단 버스에 들어가서 환담을 나누거나 구단 관계자와 친목적인 언행을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100만원 이하

기타

1.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70만원 이하
2.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실을 찾아와서 판정에 항의하거나 경기장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3.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실로 찾아와서 폭행을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4. 구단 관계자가 경기 중 관객을 선동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200만원 이하
5.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후에 심판실로 찾아와서 사적인 환담을 나누거나 친목적인 언행을 하였을 때
   제재 : 경고, 제재금 100만원 이하

(2003.3.10 ➜ 2003.12.9 ➜ 2008.2.19 개정)

KBO 표창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O 소속 구단 및 선수, 심판위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1. 표창의 종류는 구단표창, 개인표창, KBO 기록상 또는 KBO 기념상으로 나눈다.
2. 구단표창 및 연도 우승구단에 대한 표창
3. 개인표창 및 통산성적에 의한 제5조에 해당하는 선수 및 연도 우수심판위원에 대한 표창
4.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은 제11조에 정하는 표창을 말한다.

제3조 표창의 시기 및 장소

1. 구단표창 및 개인표창은 KBO가 적당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2.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의 표창은 해당선수(또는 구단)의 홈 그라운드에서 총재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한다.

제4조 표창방법

1. 구단표창은 표창장 및 트로피 또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개인표창에는 표창장 및 부상으로 기념품을 시상한다.
2.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기념품을 시상한다.

제5조 개인표창 종목 및 선출방식

표창종목	선출방식	비고
KBO MVP	기자단 투표	한국야구기자회 투표인단
KBO 평균자책점상	기록 의거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승률상	〃	10승 이상 투수
KBO 승리상	〃	
KBO 세이브상	〃	
KBO 탈삼진상	〃	
KBO 홀드상	〃	
KBO 타율상	〃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홈런상	〃	
KBO 타점상	〃	
KBO 득점상	〃	
KBO 안타상	〃	
KBO 출루율상	〃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장타율상	〃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도루상	〃	
KBO 페어플레이상		상벌위원회 선정
KBO 신인상	기자단 투표	한국야구기자회 투표인단
KBO 감독상	기록 의거	
KBO 심판상		KBO 선정

제6조 KBO MVP

KBO MVP란 KBO 정규시즌에서 기능 · 정신 양면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시상한다.

제7조 KBO 신인상

1. KBO 신인상이란 해당 연도의 KBO 정규시즌에서 신인 선수로 출장하여 기능·정신 양면에서 가장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시상한다.
2. 전 항의 신인선수란 KBO 소속구단의 선수로서 다음과 같은 누계 출장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5년 이내(당해 연도 제외)
   투수는 30회 이내(당해 연도 제외)
   타자는 60타석 이내(당해 연도 제외)
   단, 외국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신인선수에서 제외된다.

제8조 KBO 페어플레이상

KBO 페어플레이상이란 KBO 정규시즌에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진지한 경기태도와 판정승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KBO 리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선수에게 시상한다.

제9조 KBO 심판상

KBO 심판상이란 정확한 판정기술과 명확한 표현력, 엄정한 태도에 따른 원활한 경기운영능력, 분쟁처리능력 등을 종합 겸비한 심판에게 시상한다.

제10조 자격

1. 개인표창 종목 중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는 공식야구 규칙에 따른다.
2. 공식야구규칙에서 정하는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가 실정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연도 KBO 리그의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개인표창 종목 중 고의적 기록 작성으로 인한 타이틀 획득시 시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

1. KBO 기록상은 총재가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구단에게 수여한다.
2. KBO 기념상은 다음과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립한 자에게 수여한다.
   ① 1천안타(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② 1천득점(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③ 1백호홈런(및 100을 증가하는 단위)
   ④ 2천루타(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⑤ 1천타점(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⑥ 4백도루(및 50을 증가하는 단위)
   ⑦ 1천경기 출장(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⑧ 사이클링 안타
   ⑨ 1백승리투수(및 50을 증가하는 단위)
   ⑩ 1백세이브투수(및 50을 증가하는 단위)
   ⑪ 1천탈삼진(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⑫ 2천이닝투구(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⑬ 투수 5백경기 출장(및 100을 증가하는 단위)
   ⑭ 무안타 무득점경기 투수(9회 이상 완투)
   ⑮ 완전경기(9회 이상 완투)
   ⑯ 1백홀드(및 100을 증가하는 단위)
   ⑰ 심판위원 · 기록위원 1천경기 출장(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⑱ 기타 총재가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홀드규정

1. 세이브규정에 준해 해당 조건을 갖추면서 도중에 물러난 투수에게 「홀드1」을 준다.
2.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명의 투수에게도 「홀드1」을 준다.
3.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그 다음의 후속투수가 점수를 내주어 동점 및 역전이 되었다고 해도 「홀드1」을 준다.
   단, 이닝 도중에 주자를 남겨 놓고 물러난 때에는 그 주자가 후속투수에 의해 동점 및 역전이 되었다면 제외한다.
4. 승리투수, 패전투수에게는 홀드를 주지 않는다.

제13조 KBO 골든글러브상

각 연도의 수비, 공격, 인기도를 종합한 수상자를 투표인단이 선정한다.
시상일은 12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한다.

제14조 제3자로부터의 표창

KBO 이외의 제3자가 구단표창, 개인표창, KBO 기록상 또는 KBO 기념상에 대하여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그 행위가 KBO의 위신을 실추하거나 또는 현저한 상업 목적으로 편중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의 결정은 총재가 한다.

제15조 표창비

각 KBO 리그의 표창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KBO 예산 및 협찬으로 충당한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KBO